



장애인 교육법 (IDEA) 파트 C 절차상의 보호 규약 (부모의 권리)

DEL 11-001a KO (6/11) Korean

서문

장애인 교육법(IDEA)은 연방법으로, 자격이 있는 장애 영유아(0-36 개월)와 그 가족을 위한 조기 개입 서비스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들은 IDEA 파트 C 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들에 대해서는 연방 규정(34 CFR Part 303)과 워싱턴 주 정책 및 절차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워싱턴 주의 경우, 파트 C 체계는 영유아 조기 지원(Early Support for Infants and Toddlers, ESIT) 프로그램으로 불립니다. 이 체계는 가족의 개입을 극대화하고 조기 개입 과정의 각 단계에서 부모의 동의를 확보하여 조기 의뢰를 시작으로 서비스 제공 및 이행까지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ESIT 프로그램에는 34 CFR 303.510-512 의 행정 고발 절차를 포함하여, 34 CFR 303.401-460 의 연방 규정 하에 정의된 대로 부모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상의 보호 규약이 포함됩니다. 부모에게는 이러한 절차상의 보호 규약에 대해 알려야 하는데, 이로써 부모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고 자신들의 자녀와 가족에게 제공된 서비스에 있어서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본 부모의 권리 문서는 연방 규정 파트 C 에 정의된 바와 같이 아동과 가족에 대한 절차상 보호 규약을 공식적으로 통보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아동 및 가족의 절차상 보호 규약에 관한 추가 정보는 각 FRC(Family Resources Coordinator), 조기 개입 서비스 계약자 및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조기 개입 서비스 공급자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FRC(Family Resources Coordinator)

는 가족들을 상대로 일하는 이들로, 가족들이 파트 C 에 따른 절차상의 보호 규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가 자료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귀하와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전문가들과 파트너가 되어 귀하의 자녀의 발달상에 필요한 사항들을 충족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절차상의 보호 규약 개요(부모의 권리)

워싱턴 주 영유아 조기 지원 프로그램 (ESIT) 내에서 귀하에게는 부모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 여러 학문 분야에 걸쳐 종합적인 평가 및 사정, 그리고 의뢰에서 초기 개입까지 45 일(역일 기준) 내에 개별화 가족 지원 계획(IFSP) 개발에 대한 권리.
- 평가, 사정, IFSP 개발, 서비스 조정 및 절차상 보호를 무상으로 받을 권리.
- 파트 C 에 의거하여 자격이 되는 경우, IFSP 에서 제기된 대로 **적정 조기 개입 서비스**를 받을 권리. 부모가 승인하는 경우, 민영 및/또는 공영 보험사에 해당 서비스에 대한 청구서를 우송할 수도 있습니다.
- 평가, 사정 및 서비스를 거부할 권리.
- 자녀의 장애 판정(identification), 평가 또는 배정에 대한 변경 제안 또는 귀하의 자녀나 가족에게 적절한 조기 개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떤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회의에 참석을 요청받고 참석할 수 있는 권리.
- 자녀의 장애 판정, 평가나 배정, 또는 자녀나 가족에 대한 적절한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변경 사항을 제안하거나 거부하기 전에 시기적절하게 서면 통보를 받을 권리.
- 아동 발달상의 요구를 충족하기에 적절한 정도로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각각의 조기 개입 서비스를 받을 권리.

“적절한 조기 개입 서비스(Appropriate early intervention services)”

는 IFSP 의 과정을 통해 결정됩니다. IFSP 에는 IFSP 에서 확인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아동과 가족의 고유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특정 조기 개입 서비스에 대한 서술이 포함됩니다. 연방 규정 파트 C www.nectac.org/idea/303regs.asp 에서는 조기 개입 서비스를 “파트 C 에 의거하여, 자격이 있는 아동의 발달상의 요구와 더불어, 해당 아동의 발달 향상과 관련한 가족의 요구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만들어진”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개인 신분 정보**의 기밀성 유지에 대한 권리.
- 자녀의 기록을 열람 및 검토하고, 적절한 경우, 수정할 수 있는 권리.
- 부모/공급자의 의견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조정 절차 및/또는 공정한 적법 절차 심의회(due process hearing)를 요청할 권리.
- 행정 고발을 제기할 권리.

개인 신분 정보(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에 포함되는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귀하의 자녀의 이름, 귀하의 이름 또는 기타 가족 구성원의 이름; 2) 자녀의 주소; 3) 자녀 또는 귀하의 사회 보장 번호와 같은 개인 ID; 4) 귀하의 자녀를 상당히 확실성있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적인 특징 또는 기타 정보 목록.

위에서 언급된 권리에 더하여, 귀하에게는 파트 C 에 의거하여 구체적인 절차상의 보호 규약을 통보받을 권리가 부여됩니다. 이러한 권리는 아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전 통보서

조기 개입 서비스 계약자나 조기 개입 서비스 공급자가 자녀의 장애 판정, 평가나 배정, 혹은 귀하의 자녀 및 가족에 대한 적절한 조기 개입 서비스 공급의 개시 또는 변경을 제안하거나 거부하기 전에 귀하에게 사전 통보서를 합당한 시간 내에 제공해야만 합니다. 통보 내용은 다음에 대해 귀하가 알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해야 합니다.

- 조기 개입 서비스 계약자나 조기 개입 서비스 공급자가 제안 또는 거부하고 있는 행위.
- 조치를 취하게 된 이유.
- 파트 C 에 따라 이용 가능한 모든 절차상의 보호 조치.
- 이의 제기 방법 및 해당 절차의 일정에 대한 설명을 포함, 주의 이의 제기 절차.

통보서는 일반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모국어로 작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지 않는 한 모국어로 작성된 통보서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모국어 또는 기타 의사 소통 방법이 문자 언어가 아닌 경우, 조기 개입 서비스 계약자 또는 조기 개입 서비스 공급자는 다음 사항들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 통보 내용은 구두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귀하의 모국어나 기타 의사소통 방법으로 통역됩니다.
- 귀하가 통보 내용을 이해합니다.
- 이러한 절차에서 기술된 요건들이 충족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가 마련됩니다.
- 귀하가 청각 장애, 시각 장애, 글을 읽을 수 없거나 문자 언어가 없는 경우, 의사소통 방법은 귀하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방법(예: 수화, 점자, 구두 의사소통)이어야 합니다.

부모의 동의

동의(Consent)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귀하는 동의를 구한 활동에 대한 모든 정보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귀하의 모국어나 기타 의사소통 방법으로 제공됩니다.
- 귀하는 귀하의 동의를 구한 활동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알고 있고 서면으로 동의하게 되며, 동의서에는 해당 활동이 설명되어 있고 공개될 기록(있는 경우) 및 공개 대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귀하는 자발적으로 동의서를 승인한 것이며, 동의서 승인은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모국어란, 제한된 영어 능력을 가진 사람들과 관련하여 사용될 경우, 자격이 있는 아동의 부모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의사소통 방법 또는 언어를 의미합니다.

파트 C에 의거하여 자격이 있는 아동의 부모로서, 귀하는 귀하의 자녀나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본 프로그램 하의 어떠한 조기 개입 서비스를 수락할 것인지 아니면 거절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또한, 그러한 서비스(가족 자원 조정(Family Resources Coordination) 규정 하에 따라 요구된 행정적 기능은 제외)를 처음에는 수락했다가 후에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ESIT 프로그램 하의 다른 조기 개입 서비스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기록

기록의 검토

본 문서에 약속한 정보의 기밀성 유지 절차에 따라, 귀하에게는 자녀와 관련하여 평가 및 사정, 적격성 판정, IFSP의 개발 및 이행, 개별적인 불만사항, 그리고 자녀와 가족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파트 C 프로그램의 다른 부분에 관하여 기록을 살펴보고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본 섹션에서는 다음의 정의들이 사용됩니다. (1) "파기(Destruction)"은 정보로부터 개인 ID(신분의 물리적인 파괴 또는 제거를 의미하며, 더 이상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합니다. (2) "교육 기록(Education record(s))" 또는 "기록(record(s))"은 가족교육권리 및 사생활보호법(FERPA)에 의해 보호되는 기록을 의미합니다. (3) "참여 기관(Participating agency)"은 파트 C에 의거하여 개인 신원 정보를 수집, 유지 관리 또는 사용하는 단체나 기관 혹은 정보를 획득한 단체나 기관을 의미합니다.

각 조기 개입 서비스 계약자나 조기 개입 서비스 공급자는 파트 C에 의거하여 해당 계약자나 공급자 측이 수집, 유지 또는 사용하는 귀하의 자녀나 가족에 관한 모든 기록을 살펴보고 검토(업무 시간 중)할 기회를 귀하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조기 개입 서비스 계약자나 조기 개입 서비스 공급자는 불필요하게 지체하는 일 없이, IFSP와 관련된 모든 회의나 자녀와 가족에 대한 장애판정, 평가, 배정이나 서비스 공급과 관련한 심의회(hearing) 전에 요청에 따라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요청이 있은 후 45일(역일 기준)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조기 개입 기록을 살펴보고 검토할 수 있는 기회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 기록의 설명 및 해석에 대한 합당한 요청에 대해 조기 개입 서비스 계약자 또는 조기 개입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응답을 받을 권리.
- 기록 사본을 제공하지 않아서 귀하가 기록을 열람 및 검토할 기회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조기 개입 서비스 계약자나 조기 개입

서비스 공급자에게 정보가 포함된 기록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권리.

- 귀하를 대신하여 기록을 열람 및 검토할 사람을 둘 권리.

조기 개입 서비스 계약자나 조기 개입 서비스 공급자는 보호, 별거, 이혼과 같은 문제를 주관하는 적용 가능한 주법들이나 법원 명령에 따라 귀하에게 권한이 없음으로 통보 받은 경우가 아닌 한, 귀하에게 자녀와 관련된 기록을 열람 및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조기 개입 서비스 계약자나 조기 개입 서비스 공급자는 파트 C에 의거하여 수집, 획득 또는 사용된 기록에 대한 접근권을 획득한 당사자에 대한 서면 기록을 보관한다(부모 및 해당 계약자나 공급자 측의 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이 접근하는 경우 제외). 이러한 기록에는 당사자의 이름, 접근 권한이 부여된 날짜 및 자녀의 기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당사자가 권한을 부여받게 된 목적이 포함됩니다.

조기 개입 기록에 두 명의 자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경우, 해당 자녀나 귀하와 관련된 정보, 혹은 그러한 특정 정보가 제공된 사실에 대한 정보만 열람 및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각 조기 개입 서비스 계약자나 조기 개입 서비스 공급자는 요청 시, 귀하에게 해당 계약자나 공급자가 수집, 유지 관리 또는 사용한 조기 개입 기록의 유형 및 위치 목록을 제공합니다. 조기 개입 서비스 계약자 또는 조기 개입 서비스 공급자는 수수료로도 귀하의 기록 열람 및 검토 기회 사용을 효과적으로 막지 못하는 경우, 파트 C에 의거하여 부모를 위해 만들어진 기록 사본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트 C에 의거하여 정보를 검색 또는 복구하는 데 대한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트 C에 의거하여 수집, 유지 관리 또는 사용된 조기 개입 기록 내의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귀하의 자녀나 가족의 프라이버시 또는 다른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귀하는 해당 정보를 유지 관리하는 조기 개입 서비스 계약자나 조기 개입 서비스 공급자에게 그 정보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계약자나 공급자는 요청을 받은 후 합당한 시간 내에 해당 요청에 따라 정보를 수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해당 계약자나 공급자가 귀하의 요청대로 정보 수정을 거절하는 경우, 귀하에게 거절 사실이 통보되어야 하며, 심의회에 대한 권리도 통보되어야 합니다.

조기 개입 서비스 계약자 또는 조기 개입 서비스 공급자는 요청 시, 조기 개입 기록 내의 정보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심의회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여, 정보가 정확하고 오해의 소지도 없으며 아동의 프라이버시나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도록 합니다.

- 심의회 결과, 해당 정보가 부정확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자녀의 초기 평가 및 사정이 실시되기 전에 귀하의 동의서를 얻어야 합니다. 보통, 귀하가 초기 평가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귀하에게 강요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평가 또는 사정에 대한 동의의 거부나 방치 또는 확대로 여겨지는 경우, 워싱턴 주의 아동 보호 서비스 법 및 규칙이 적절히 적용됩니다.

또한, 조기 개입 서비스가 제공되기 전에 귀하의 동의서를 얻어야 합니다.

귀하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FRC(Family Resources Coordinator), 조기 개입 서비스 계약자, 조기 개입 서비스 공급자 또는 적절한 자격을 갖춘 직원은 다음 항목들을 확실히 하기 위해 합당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 귀하가 평가 및 사정의 본질 또는 이용 가능한 서비스에 대해 충분히 잘 알고 있다는 점.
- 귀하의 동의가 없으면 자녀는 평가 및 사정 또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귀하가 알고 있다는 점.

아니면 아동의 프라이버시나 기타 권리를 침해한다고 계약자나 공급자가 결정을 내리면, 그에 맞춰 해당 정보를 수정해야 하며, 귀하에게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 심의회 결과, 해당 정보가 부정확하지 않고 오해의 소지도 없으며, 그 밖에 아동의 프라이버시나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계약자나 공급자가 결정을 내리면, 귀하에게는 해당 정보에 대해 견해를 밝히고 계약자나 공급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진술을 자녀의 기록 안에 기입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통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귀하의 자녀의 기록에 기입되는 설명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기록 또는 이의가 제기된 부분(귀하가 동의하지 않는 기록의 일부)이 조기 개입 서비스 계약자나 조기 개입 서비스 공급자에 의해 유지 관리되는 한, 이러한 설명도 그 계약자나 공급자에 의해 자녀의 기록의 일부로 유지 관리되어야 합니다.
- 자녀의 기록 또는 이의를 제기한 부분이 해당 계약자나 공급자에 의해 어떤 당사자에게 공개되는 경우, 해당 설명 부분도 함께 그 당사자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본 섹션에 따라 개략된 심의회는 34 CFR 99.22에 근거한 가족교육권리 및 사생활보호법(FERPA) 규정 하의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정보의 기밀성 유지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을 때 반드시 사전에 부모의 동의를 획득해야 합니다.

- FERPA (34 CFR 99.31)에 의거하여 권한이 부여된 경우 외에, 파트 C에 따라 정보를 수집 또는 사용하는 중에 계약자 또는 공급자 측의 관리 이외의 사람에게 개인 신원 정보를 공개할 때.
- 파트 C에 따른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 외에 다른 목적으로 개인 신원 정보를 사용할 때.

자녀의 조기 개입 기록의 정보는 조기 개입 서비스 계약자나 조기 개입 서비스 공급자가 FERPA에 의거하여 권한을 부여받지 않는 한, 부모의 동의 없이 해당 계약자나 공급자에 의해 다른 기관에 공개될 수 없습니다.

기록의 기밀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보호 조치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 각 조기 개입 서비스 계약자나 조기 개입 서비스 공급자는 수집, 보관, 공개 및 파기 단계에서 개인 신원 정보의 기밀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 각 조기 개입 서비스 계약자나 조기 개입 서비스 공급자 측의 관리 한

명이 개인 신원 정보에 대한 기밀성 보장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 개인 신원 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용하는 모든 개인은 IDEA 및 FERPA를 준수하는 워싱턴 주의 파트 C 정책 및 절차에 관하여 교육 또는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 각 조기 개입 서비스 계약자나 조기 개입 서비스 공급자는 개인 신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관 내 해당 직원들의 이름과 직위의 현 목록을 공람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 조기 개입 서비스 계약자나 조기 개입 서비스 공급자는 파트 C에 의거하여 수집, 유지 관리 또는 사용된 개인 신원 정보가 해당 아동이나 가족에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 이를 부모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해당 정보가 아동이나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될 때, 부모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귀하의 자녀와 가족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참석률 및 완료 연도에 대한 영구적인 기록은 시간 제한 없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분쟁 해결 절차

귀하가 자녀의 장애 판정, 평가, 배정 또는 자녀나 가족에 대한 적절한 조기 개입 서비스 공급과 관련하여 조기 개입 서비스 계약자나 조기 개입 서비스 공급자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귀하의 우려 사항에 대해 시기적절한 해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분쟁 해결을 위해 귀하가 이용할 수 있는 세 가지 공식 절차에 대한 개요입니다. 여기에는 조정 절차, 공정한 적법 절차 심의회 및 행정 고발이 포함됩니다.

조정 절차

조정 절차는 비적대적인 방식으로 의견 충돌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귀하에게 제공합니다. 조정은 자발적인 것으로, 양 당사자가 기꺼이 동의해야 합니다.

조정 절차는 조정 요청이 주의 주관 기관에 접수된 후 적절한 시기에 완료되어야 하며, 공정한 적법 절차 심의회에 대한 귀하의 권리를 부인하거나 지연시키는데 사용하거나 파트 C에 따른 귀하의 다른 권리를 부인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조정은 적절한 시기로 일정을 잡게 되며, 양 당사자 모두에게 편리한 장소에서 열리게 됩니다. 효과적인 중재 기법을 훈련받은 적격의 공정한 조정관이 양측 당사자를 만나, 편안하고 비적대적인 분위기에서 분쟁에 대한 해결책을 찾도록 돕습니다.

주의 주관 기관에서는 장애가 있는 영유아 및 그들의 가족을 위한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법률과 규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 자격을 갖춘 조정관의

목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정 비용에 대한 책임은 주의 주관 기관에 있습니다.

조정 과정 중에 발생하는 논의 사항들은 기밀로 다루어져야 하며, 그 후의 공정한 적법 절차 심의회나 민사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조정 당사자들은 해당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비밀 유지 서약에 서명해야 합니다.

양측 당사자는 조정 합의서에 서명해야 하며, 조정 절차 종료 시 양측 당사자에게 합의서 사본이 제공됩니다. 조정 중에 합의에 도달하면, 그 합의서는 법적 구속력을 지니게 되며 미국 연방 지방 법원 또는 합법적인 관할권 내 주 법원에서 강제할 수 있게 됩니다.

조정 절차에서는 공정한 적법 절차 심의회를 아무때나 요청하는 것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아래에 기술된 바와 같이, 조정 절차 및 공정한 적법 절차 심의회에 대한 요청을 동시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적법 절차 심의회

공정한 적법 절차 심의회는 공명정대한 심문관에 의해 수행되는 공식적인 절차이며, 개별 아동에 대한 불만 사항을 제기하고자 하는 가족들을 위한 선택사항입니다.

공정한 적법 절차 심의회를 열고자 하는 가족들은 자신들의 요청을 서면으로 불만 사항을 설명하여 직접 주관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정한 적법 절차 심의회는 해당 요청 접수 30일(역일 기준) 이내에 끝나야 하며, 결정서(written decision)가 만들어집니다. (조정이 시도된 경우, 조정 절차도 동일한 30일 이내에 일어나야 합니다.) 적법 절차 심의회를 열기 위해 심문관들이 지명됩니다.

적법 절차 심의회 심문관(Due process Hearing Officers)은 “공정”해야 합니다. 공정한 심문관으로 임명된 사람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 해당 아동의 케어 또는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주의 주관 기관, 조기 개입 서비스 계약자 또는 조기 개입 서비스 공급자의 직원이 아닙니다. (2) 해당 절차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객관성과 상충하는 개인적 또는 직업적인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심문관으로서의 자격을 다른 방법으로 얻은 사람의 경우, 단지 그 사람이 적법 절차 심의회에의 조항을 이행함으로써 기관이나 프로그램으로부터 보수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주관 기관, 조기 개입 서비스 계약자나 조기 개입 서비스 공급자의 직원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심문관들은 파트 C의 조항에 대해 지식이 있어야 하며, 자격이 있는 아동 및 그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및 요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심문관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불만 사항에 대한 관련 의견 발표에 귀를 기울이고, 해당 문제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검토한 후 불만 사항에 대한 시기적절한 해결책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결정서를 포함하여 법적 절차에 대한 기록은 주의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 파트 C에 의거하여, 귀하에게는 이러한 절차에 따라 수행되는 공정한 적법 절차 심의회에서 아래 목록의 권리들이 부여됩니다.
- 파트 C에 의거하여 자격이 있는 아동에 대한 조기 개입 서비스에 대해 특별한 지식 또는 교육을 받은 개인 및 변호인(귀하의 비용으로)을 동반하여 조인을 받을 권리.
 - 증거를 제출하고 대질 및 반대 심문을 하며 증인의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권리.
 - 심의회 개최 최소 5일(역일 기준) 전까지 귀하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증거를 심의회에서 제출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권리.
 - 심의회 기록 또는 전자 축음식(정확히 말한 그대로의) 심의회 기록을 입수할 수 있는 권리.
 - 사실 인정문 및 판결에 대한 기록(결정서)을 입수할 수 있는 권리.

이 절차에 기술된 공정한 적법 절차 심의회는 귀하에게 적당히 편리한 시간 및 장소에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주 주판 기관이 귀하의 불만 사항을 접수한 후 늦어도 30일(역일) 후까지는, 공정한 적법 절차 심의회가 마무리되어야 하며 결정서는 관련 당사자에게 각각 우송되어야 합니다. 공정한 적법 절차 심의회는 판결 및 결정에 만족하지 못한 당사자는 주 법원 또는 연방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불만 사항과 관련된 계류(기간) 동안, 조기 개입 서비스 계약자나 조기 개입 서비스 공급자와 귀하가 다른 방법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귀하의 자녀 및 가족에게는 현재 제공되고 있는 조기 개입 서비스가 계속 제공됩니다.

불만 사항이 초기 서비스의 적용과 관련이 있는 경우, 귀하의 자녀와 가족에게는 분쟁 대상이 아닌 서비스들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행정 고발

위에 언급된 조정 및 적법 절차 심의회 외에, 다른 주의 개인이나 조직을 포함한 개인이나 조직은 파트 C 프로그램의 요건을 위반하고 있는 조기 개입 서비스 계약자나 조기 개입 서비스 공급자뿐 아니라, 공공 기관이나 민간 서비스 공급자를 상대로 서명된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발장에는 파트 C의 요건이 위반되고 있다는 진술과, 고발의 근거가 되는 사실의 진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행정 고발은 위반으로 주장되는 사항의 발생 1년 이내에 주의 주판 기관에 제기 및 접수되어야 합니다. 특정 상황의 경우, 고발 제기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아동 또는 다른 아동에게 위반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경우.
- 주 주판 기관에 고발이 접수된 날짜 이전 3년 이내에 발생한 위반 행위에 대해 고발을 제기한 사람이 배상 또는 교정 조치를 요청하고 있는 경우.

일단 주 주판 기관이 고발을 접수하면, (예외 사항이 존재하지 않는 한) 60일(역일 기준) 동안에 다음 항목들을 수행해야 합니다.

- 고발 내용을 조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독립적인 현장 조사 수행이 포함됩니다.
 - 모든 관련 정보를 검토한 후 파트 C 요건에 대한 위반의 발생 여부에 대해 독립적인 판결을 내립니다.
 - 고발장 내의 각 주장들을 처리하고 최종 판결 이유뿐 아니라 사실 및 결론도 포함된 결정서를 고발인에게 발행합니다.
- 고발을 제기한 개인이나 조직에게는 해당 고발에 대한 추가 정보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기회가 있습니다. 최종 판결에서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다/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판명되는 경우, 주 주판 기관에서 착수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과 그 가족의 요구에 적절한 금전적인 배상이나 기타 교정 조치 등을 적절히 포함시켜 서비스 거부 문제를 재조정하는 방법.
 - 장애가 있는 모든 유아동과 그 가족들을 위한 서비스의 적절한 추후 제공.

주 주판 기관에서는 필요한 경우, 기술적인 지원 활동, 협상 및 교정 조치들을 포함하여 판결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절차들을 통해 승낙을 얻어 내야 합니다.

고발장이 접수된 경우, 이것이 적법 절차 심의회에의 주제이거나, 여기에 여러 개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어 그 중 하나 이상이 적법 절차 심의회에도 포함되는 경우, 주 주판 기관에서는 해당 심의회 종결 시까지 심의회에의 주제와 겹쳐지는 고발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적법 절차 심의회에 포함되지 않는 고발 내의 문제는 본 문서에 기술된 고발 절차를 사용하여 60일(역일)의 기간 내에 해결해야 합니다.

동일한 당사자들과 연루되어 있고, 공정한 적법 절차 심의회에서 이미 판결이 난 고발 건인 경우, 이 절차에 따라 고려할 수 없습니다. 주 주판 기관은 심의회에 판결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음을 고발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공공 기관 또는 민간 서비스 공급자(조기 개입 서비스 계약자나 조기 개입 서비스 공급자 포함)가 적법 절차에 따른 판결을 불이행한 것에 대한 고발은 주 주판 기관에 의해 해결되어야 합니다.

대리 부모

파트 C에 의거하여 자격이 있는 아동의 권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보호를 받습니다.

- 부모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조기 개입 서비스 계약자나 조기 개입 서비스 공급자의 합당한 노력 후에도 부모의 소재를 알아낼 수 없는 경우.
 - 아동이 주 법률에 따라 워싱턴 주의 보호대상자인 경우.
- 뒤에 나오는 절차에 따라, 부모에 대한 "대리인" 역할을 할 개인을 지정합니다. 이 절차에는 아동에게 대리 부모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고 아동에게 대리인을 지정하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대리인 선정 시 다음 기준이 채택됩니다. 대리 부모는 각 조기 개입 서비스 계약자나 조기 개입 서비스 공급자에 의해 선정되며, 다음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대리인이 대표하는 아동의 이해 관계와 상충하는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아동의 충분한 대의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식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주 정부 기관의 직원 또는 아동이나 해당 아동의 가족 구성원에게 조기 개입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측의 직원이 아닙니다. 이 절차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대리 부모가 될 자격을 얻은 사람의 경우, 단지 대리 부모 역할을 수행하여 조기 개입 서비스 계약자나 조기 개입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보수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직원으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 대리 부모는 다음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아동을 대변할 수 있습니다.
- 아동의 평가 및 조정.
 - 연간 평가 및 정기 IFSP 검토를 포함, 아동의 개별화 가족 지원 계획(IFSP) 개발 및 이행.
 - 아동에게 현재 제공 중인 조기 개입 서비스.
 - 파트 C에 따라 확립된 기타 권리.

문의처 정보

절차상의 보호 규약에 대해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의 FRC(Family Resources Coordinator)에게 문의하십시오.:

또는:

Early Support for Infants and Toddlers
 Department of Early Learning
 P.O. Box 40970
 Olympia, Washington 98504-0970
 전화: 360.725.3500
 팩스: 360.413.3482
<http://www.del.wa.gov/esit>

Washington PAVE
 (Partnerships for Action, Voices for Empowerment)
 6316 s. 12th Street
 Tacoma, Washington 98465
 전화: 1-800-5-PARENT
 팩스: 1-253-566-8052